

I. 들어가는 글

미국 성범죄 처벌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그 기원을 둔다(Burgess-Jackson, 2001). 과거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사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법률 시스템 하에서 여성의 성범죄 피해는 일종의 물적 가치의 손상으로 여겨졌다. 또한, 가부장적 상속제도 하에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혼 여성일 경우에만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성범죄 법은 물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위치와 피해자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개념 속에서 발전했다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Schwendinger & Schwendinger, 1982).

여성의 인격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60~70년대 제2물결 여성운동을 거치며 시작되었다(Roman & Estrich, 2011). 당시 여성 인권 활동가와 학자들은 사적이며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던 성폭력 범죄의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행동이 조신하고 정숙한’ 여성만이 관련 법의 보호를 받았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입법 운동의 결과로 80년대에 들어서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이 48개 주에서 제정·시행되었다(Roman & Estrich, 2011). 이후, 각 주에서 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를 인식하는 법률들이 제정되는 등 미국의 성범죄 관련법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Corrigan, 2013). 이처럼 성범죄 관련법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진화했지만, 여전히 사유재산권 침해에서 기원한 흔적들이 남아있으며, 이는 성범죄 용어나 각 주의 변칙적인 요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언론보도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정 미디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보도를 할 경우, 여론이 움직일 수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Reidy, 2004).

* 미국 오레건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박사수료. youngeun@uoregon.edu

뉴스 미디어는 주로 성폭력과 관련해 범행의 방식이 비정상적이거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 혹은 유명인들이 포함된 범죄들을 보도한다(Pennington, & Birthisel, 2016). 이러한 미디어의 선별적인 보도는 성폭행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강간 문화(Rape culture) 혹은 강간 신화(Rape myth)라 불리는 왜곡된 성관념을 생산해왔다(Franiuk, 2008). 여기서 강간 신화는 “강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련의 가치와 신념”으로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종교나 법, 질서 체계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믿음으로 정의된다(Edwards et al., 2011). 이는 강간 피해자의 낙인화 및 객관화, 범죄의 정당화(Boswelland Spade, 1996 : 133) 등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남성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강간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WAVAW, 2018). 즉,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Burt, 1980, p. 217), “성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낮은 사람”이며, “남성의 성욕은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고, “피해자 여성의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보도는 미디어 서커스(media circus)로 불리며, 법정 밖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성폭력'을 가하는 역할을 해왔다(Stephen, 1992). 피해자가 재판에서 기억을 복기하며 배심원들에게 당하는 수치심이 '두 번째 성폭력'이라면, 언론이 시청률이나 구독률을 위해 피해자의 신상과 경험을 '판매'하는 행위는 '세 번째 성폭력'이라는 것이다(Reidy, 2004).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性的) 이력이나 사건 당시 동의 여부가 공개되면서, 이들은 배심원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자신이 '꽃뱀'이 아닌 '순진무구하고 순결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했다. 결국, 언론보도에 따른 '제3의 성폭력'은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가름하기보다, 피해자의 성적 도덕성과 행적을 평가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Capers, 2017). 최근에는 성범죄 언론보도와 관련해, 2017년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미투 운동'이 새로운 법적 전쟁터(New legal battleground)가 되었다(Jacobs, 2020). 주목할 점은 성범죄 공소시효 문제 등의 법적 제약으로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고,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허위로 매도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역으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의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부재하다는 사실도 '피해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쟁을 가속시켰다(Reidy, 2004; Stephen, 1992).

미국 내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주로 '증거 제출에 있어서의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된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증거의 제출이 미디어에 보도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Spencer, 2001).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연방검사 업무규칙(U.S. Attorney's Manual)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범죄의 수준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수정헌법 제1조가 성폭력 피해자보호법과 충돌하면서, 과거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은 주로 법리적 접근보다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제도권에서의 자율적인 움직임들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제도적·비제도적 차원의 방안 검토라는 주제 아래, 표현의 자유와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이 충돌한 핵심적인 판례와 관련 법제들의 동향을 검토한다. 더 나아가, 언론윤리의 관점에서 취재 시 인격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지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권 내·외부에서 기울이는 다양한 노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분쟁 관련 법제 검토

기본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¹⁾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것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1) Rape shield law는 강간피해자보호법(윤지영, 2018; 류병관, 2008) 성폭력피해자보호법(류병관, 2010)로 번역된다.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성(性)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를 총괄하는 용어다. 성기삽입만을 의미했던 협의의 강간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학계의 경향(Reitan, 2001; Ayres, 2012)에 따라, 이 글에서는 강간피해자보호법 대신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이라고 명명한다.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 역시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s)’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은 크게 두 가지를 지칭한다(Soshnick, 1987). 첫 번째는 미 연방증거규정(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12조 ‘성범죄 사건; 성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사실 또는 성적 취향의 증거 관련성(Sex-Offense Cases: The Victim’s Sexual Behavior or Predisposition)’으로, 이는 성폭력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적(past sexual behavior) 혹은 성적 취향(sexual predisposition)에 대한 교차 심문(cross-examination)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78년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은 초기에는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1994년 개정으로 민사절차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재판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Anderson, 2002). 한편, 주 정부차원의 보호법은 주마다 보호하는 성관계(sexual behavior)의 유형과 보호기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적이 성폭행 유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일치한다. 해당 법률이 존재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임을 밝히거나,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이 등장한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 위와 같은 증거 제출이나 심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브라이언 대 텍사스주 사건(Bryan v. State)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7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은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증거를 법원이 배제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폭력피해자방지법인 증거법 제412조는 피해자의 ‘과거 성행위’ 증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합의된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위 사례를 통해 해당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피해자의 난잡함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공적 담론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의 보호 아래 범죄행위를 고발하도록 독려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oshnick, 1987).

한편,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서 명시하는 과거 성적 행적의 범주에는 ‘실제 육체적 행위’ 즉, 성관계와 성접촉을 수반하거나 성관계나 성접촉을 암시하는 모든 활동뿐만 아니라 ‘환상이나 꿈과 같은 정신 활동’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한 정보도 증거 채택에서 배제되는데, 여기에는 성행위뿐만 아니라 복장, 언어, 생활 방식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동성 간 강간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이전에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사실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물론, 해당 법안에도 몇 가지 예외는 존재한다. 첫째, 정액·상처 등의 증거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특정 타인의 성관계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둘째,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경우, 마지막으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의 세 가지가 예외사항에 속한다.

연방증거법 제412조와 함께, 성폭력 사건에 자주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미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01조와 제403조의 ‘관련성(relevance)’ 조항이다. 위 두 조항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특수성 맥락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일반 범죄에 적용되지만, 제412조와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증거가 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관련성을 증명하는 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증거가 “부당한 편견을 담지하거나(unfair prejudice), 쟁점을 흐트리는 경우(confusing the issues), 더 나아가 배심원을 오도하거나(misleading the jury), 재판관을 지연시키는(undue delay)” 사례에 해당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강간피해자의 신원공개를 금지하는 법률(Victim right statue)로, 이는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해당 법안은 1974년 미시간 주가 최초로 제정한 이후, 모든 주가 연방법의 영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이들의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법령에 따르면, 미디어 출판물 또는 방송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식별 가능한 사진이나 음성 등이 포함될 수 없다. 일부 주의 법령에는 언론이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일종의 피해자 구제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

거나 위반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네브래스카 주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천 5백 달러 이상에서 최고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권리법령과 개정안(Victims' rights statutes and amendments)은 광범위한 언론보도로부터 성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사건과 무관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상황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이는 오늘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2. 과도한 언론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공인이거나 유명인인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2차 피해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Arenella, 1995). 첫 번째는 미디어의 특종 경쟁에 의해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특히, 성적 취향·과거 행적 등이 공개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불이익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언론 플레이’ 측면으로 유명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언론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함으로써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자는 이와 같은 기회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피해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다. 실제로 강간 신화(rape myth)의 영향으로 언론에서 피해자의 성적 정보를 공개한 이후 사실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피해자 귀책 여론이 형성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법률시스템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는 성공적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범죄행위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했다. 실제로 미국 내 다수의 피해자는 법정으로부터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음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Dressler, 1995). 이는 지금까지의 성폭력 판결의 쟁점이 피고인의 신체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대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6조(Sixth Amendment Right)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들이 과도한 언론보도에 직면했을 때 그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Reidy, 2004). 아래 소개할 보도금지 명령, 장소 변경 등의 조

치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주로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지만,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가 이 절차적 장치로부터 우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tephen, 1992). 수정헌법 제6조는 형사사법 체계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대중매체의 정보 노출이 배심원들의 판결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장치 중 하나가 보도 금지령(gag order)이다. 이는 법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사적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증인들, 사건과 관련된 다른 모든 당사자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배심원의 예비 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들이 잠재적 배심원들을 심사하여 그들이 사건 혹은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장소의 변경’이다. 이는 판사가 언론보도로 인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위의 세 가지 조치가 모두 실패하면, 법원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심리를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종합하면, 위의 세 가지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나 과도한 언론보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 피해자도 보도금지 명령, 장소의 변경 등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배심원 편향의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III. 성폭력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관련 주요 판례

이 절에서는 성폭력 보도와 관련해 상징적인 과거 판례들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한 최신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앞서 언급했듯, 판결의 주요 쟁점은 각 주의 성폭력 방지법과 수정헌법 제1조 사이에서 상충하는 부분의 해석 문제이다.

1.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성폭력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과 관련된 판결 중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사건이 바로 1975년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사건이다. 이는 <콕스> 방송국이 조지아 주법에 따라 재판 중 공소장을 입수해 쿤의 딸 이름을 방송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조지아주 하급심에서는 언론매체가 강간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지아주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콕스>사는 보도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라며 항소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의 화이트 판사는 사생활 보호와 언론 자유 간의 충돌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언론의 보도는 시민들에게 정부 기록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범죄의 기소와 판결에 대한 정보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두 번째, 이미 공개 기록에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도 희미해질 수 있다는 두 가지 근거에 따라, 조지아주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화이트 판사는 조지아주 법처럼 언론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자의 취재 의욕을 꺾고 언론의 자기 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2. Florida Star v. B.J.F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판례가 *Florida Star v. B.J.F* 사건이다. 1983년 10월, <플로리다 스타>지는 잭슨빌 듀빌 카운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이때 경찰국은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한 사건보고서를 작성해 기자실에 게시했고, <플로리다 스타>지 기자는 성폭행의 자세한 내용과 피해자의 실명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보도 후, 피해자인 프리드먼과 그녀의 가족은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받았고, 프리드먼은 정신적인 피해를 근거로 <플로리다 스타>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플로리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은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로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며 <플로리다 스타>지의 손을 들어주었고, 불법행위법에 따른 책임부담의 위험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호했다.

3. State v. Globe Communications Corp.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의 성폭력 재판 역시 피해자 신원 공개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다(Coombs, 1993; Matoesian, 1995). 1991년 패트리샤 보우먼(Patricia Bowman)은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William Kennedy Smith)를 강간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NBC>와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몇몇 언론사들이 그녀의 신상을 공개하며 과거 성적 행적을 자세하게 보도했고, 이는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팜비치 카운티 검사는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Globe Communication>이 플로리다 성폭력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경범죄로 기소했으나, 1994년 항소심 판결 *State v. Globe Communications Corp.*에서 재판부는 <플로리다 스타>지 사건을 인용하며 “만약 신문이 공공의 중요 사안에 대해 합법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얻는다면, 주 공무원들은 주의 이익증진과는 상관없이 해당 정보의 출판 및 보도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행위를 미화하고 낭만화시키는 언론의 무감각함(insensitivity)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자, 이러한 보도와 유명인의 지위가 배심원들이 내린 최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보공개가 배심원에게 미칠 영향력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ermidan, 1994).

4. People v. Bryant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은 콜로라도주의 ‘*People v. Bryant*’ 판결이다. 2003년 7월 콜로라도주는 NBA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피해자는 반대 심문에서 성폭행으로 인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제시했고, 여기에 브라이언트 측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3일 동안 세 명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의 성경험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실수로 피해자에 대한 문건이 언론에 전송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과거는 <LA 타

임스)와 기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콜로라도 법원은 기존의 판결 경향을 뒤집고, 피해자의 잠재적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권리가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보다 우선하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콜로라도 주 판결은 과거 재판부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개인의 사생활권이 충돌하는 경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한 것과 달리, 피해자 프라이버시권의 잠재적 침해가 극심하다면 수정헌법상 언론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법리적 의미가 크다(Fialkow, 1995; 류병관 2010 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성 판단 기준’이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 코비 브라이언트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언론보도에서도 첨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Yes means Yes 룰’을 적용한 “학생안전: 성폭력 법(Student Safety: Sexual Assault bill)”을 인준해 교육법(Education Code)에 삽입하였다. 해당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성폭력 여부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합의’를 가장 우선시하고, 성관계에 한해서는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의사 표현만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물론, 이는 엄밀히 말해 형사입법은 아니며 대학의 재정지원 요건에 관한 사안이지만 실제 성폭행 재판의 핵심인 ‘피해자 동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피해자 저항의 적극성 여부도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쟁점 중 하나로 강간에 대한 협소한 정의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편견과 2차 가해로 이어져 피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피해자의 저항이 “극도의 저항”(utmost resistance)이었는지, “진지한 저항”(earnest resistance) 혹은 “합리적 저항”(reasonable resistance)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해서 변해왔다(Lafav, 2019). 오늘날 미국 모범형법전 제213조는 비동의(Nonconsent)를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의 거부(refusal to consent to sexual intercourse or sexual contact)로, 이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된 것(communicated by either words or actions)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3년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성범죄 통계에서 강간을 “여성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성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과거 피해자의 침묵이나 저항 없음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인식되고 2차 가해가 이루어졌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 상당 부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범죄 보도에서는 필연적으로 특정인의 인격권, 언론 표현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등 다양한 인권 문제와 헌법상 기본권들이 교차한다. 여러 법적 쟁점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 권리 법령으로 생기는 프라이버시권(The Right of Privacy)과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 근거한 언론의 자유 간 충돌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과거 연방법원이 피해자의 사생활권이 수정헌법 제1조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회피한 전례들에서 기인한다.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사건의 맥락을 해석하는 법원의 자율성에 달린 것이다.

재판부의 해석 이외에도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로, 즉, 수단의 적법성도 상충하는 권리의 우위성을 판단할 주요 근거이다. 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언론이 공식적인 경찰 보고서(Florida Star, 491 U.S. p. 532), 재판기록, 혹은 문서를 통해(Globe Communications Corp., 648 So. 2d, p. 111) 정보를 취득했다면, 연방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에 무게를 두어, 피해자의 권리 법령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코비 브라이언트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이 보도할 경우, 마치 ‘증거로 인정된 것과 동일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극대화될 것을 고려하여 판결했다고 밝혔다(Haddad, 2020). 이는 재판과정의 변수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사생활권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언론보도의 자유와 피해자 인격권 간 충돌에는 여러 차원의 맹점이 존재한다. 전자를 우선시할 경우, 정보 공개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미디어의 과열된 보도로 인해 왜곡된 성적 고정관념이 재생산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들은 다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인격권을 보호하는 현 제도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실상, 언론이 피해자의 이름 혹은 신원‘만’ 노출하지 않는다면 다른 배경 지식 공표는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공개 문제는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성폭력피해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두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언론에 의한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가의 질문까지 포괄하고 있다(Berlin, 1995).

IV.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자율규제

지금까지 수사과정 혹은 재판과정 중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 인격권 침해 사례와 관련 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사건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언론사와 시민단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알아본다.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적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1994년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개최된 성범죄와 미디어(Sex Crimes and the Media) 세미나이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언론계, 학계, 피해자지원단체들은 모두 성범죄 관련 보도가 다양한 주체들의 이익이 얽힌 복잡한 문제임에 동의했고, 언론인은 취재원과 청중에게 상반된 책임의식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각계 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참석자들은 모든 사건에 적용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Black, 1994). 이와 관련해, 제이 블랙(Jay Black)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교수는 강간사건을 보도하는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Black, 1995). 다시 말해,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은 이미 모두 정당하고 고유한 헌법적 권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우위에 둘 것인가?’의 질문을 넘어서지 못하면 딜레마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Black, 1995). 더 나아가, 해당 주제를 둘러싼 논쟁이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피해자의 인격권의 세 가지 상충되는 법리적 관점에만 국한되는 경향은 공동의 해결책 마련에 장애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블랙(1995)은 문제 해결에 있어, 현장에서의 한계로 저널리스트들의 전문성도 지적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인과 편집인은 사회심리학이나 범죄학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 범죄보도 준칙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다. 이러한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와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는 불필요한 가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바움 외(Baum et al., 2018) 또한 성폭력 보도의 질은 지역 규범과 강간 문화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장치 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사쓰기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1. 미국 내 주요 연구소 및 NGO의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이처럼 언론보도에 있어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조직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디어와 성범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나 비영리연구소(Poynter), 시민조직(Chicago Taskforce on Violence Against Girls & Young Women, Michigan Coalition Against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NSVRC: 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자들을 위한 성범죄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이 언론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보도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사용

성범죄보도 가이드라인은 주로 적합한 용어 사용과 취재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닛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센터(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의 브루스 샤피로(Bruce Shapiro) 교수는 “많은 뉴스 기관에서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글을 쓰는 방식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범죄보도 관련 용어 선택에 있어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피해자(victim)’와 ‘생존자(survivor)’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범죄의 희생자를 지칭할 때는 손해를 가한 주체 즉,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피해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언어 담론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학계에서는 비관적이고 패배적인 용어인 ‘피해자(victim)’가 아닌, 무력한 상태에 갇히지 않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뉘앙스의 ‘생존자(survivor)’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종종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과장한다는 비난을 받는 성폭력 피해자 불신의 문화를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불리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실제 NPR(National Public Radio) 지침에서도 성폭력은 보통의 성관계가 아니고, 강간(rape)과 폭행(assault)도 서로 다른 단어로 구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생존자’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존자’라는 용어가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동사 표현 및 인용 방식의 문제이다. 관습적으로 영문 기사에는 행위 주체의 의견을 제시할 때, ‘주장하다 (“allege,” “alleged”)’ 혹은 ‘주장한 바에 의하면(“allegedly”)’ 등의 표현이 자주 채택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역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바,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은 지양(Garcia-Rojas, 2011 The Chicago Taskforce’s media toolkit)하면서 “police say” 또는 “prosecutors say”와 같이 주장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Newscript.com, 2012).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admit’과 ‘confess’도, 범죄의 생존자로서 극복 의지보다 책임과 수치심 등 ‘패배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 번째, 관련 단체들은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재해석한 글이 아닌,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여 대중에게 전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요 경험이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 외에도, 가해자를 삭제하고 피해자를 부각하는 수동식 표현(“was raped”),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표현,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는 상해를 입지 않은(physically unharmed), 부부싸움(domestic dispute) 등도 금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모호하게 만드는 용어인 성행위(sexual activity), 추행(molest), 성적 쾌락을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용어인 애무하다(fondle), 구강성교(oral sex) 등의 사용 역시 자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래는 미네소타 성폭력 피해자 지지 모임이 만든 저널리스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용어 사용 예시이다.

〈표 1〉 MNCASA의 저널리스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용어 사용 예시

Problematic Language:	Alternate Suggestion in Judicial Reporting:
Engaging in sexual contact	Forced penile-vaginal or anal penetration or rape
Intercourse/ Insertion of penis	Forcibly touched
Panties	Underwear or undergarments
Private Parts	State body part - i.e. vagina, breasts, buttocks, penis For children use terms nipple or underdeveloped chest, not breast
Climax	Ejaculation
Kissed	Placed/Put/Forced his mouth on the victim/survivor's mouth/nipple/ vagina/neck/stomach/penis (body part)
Molestation	Forcible touch of the victim/survivor's intimate body part. Distinguish if penetration involved.
Accompanied/guided victim	Carried, brought, compelled, forced victim/survivor
Stroking	Forcible physical or manual contact on victim/survivor's intimate body part
Victim received/ performed oral sex	Forced mouth onto victim/survivor's genitals/Forced penis into victim's mouth

출처: MNCASA(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Guide for Journalists

(2) 피해자 실명 공개

미국 사법부 피해자보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서 헐박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범죄는 사회적 통념상 불명예스러운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법제상 피해자의 신상은 이름을 제외한 일부 정보만을 공개·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익명보도 원칙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최적의 수단'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이 이들의 신원공개 여부에 좌우된다는 강한 믿음과는 달리, 마이클 가트너(Michael Gartner)는 가정 내 폭력에서는 익명보도가 피해자에게 더 큰 가해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가정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강간에 대한 낙인이 강화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이 역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Gartner, 1991).

〈Des Moines Register〉의 편집장이었던 오버홀서(Geneva Overholser)도 1990년대 성범죄 생존자이자 피해자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운동가인 낸시 지겐마이어(Nancy Ziegenmeyer)의 경험을 보도하며, 가트너와 유사한 주장을 제시했다. 당시 오버홀서는 제인 쇼어(Jane Schorer) 기자와 함께 대학 내 주차장에서 14개월간 성폭행을 당한 낸시 지겐마이어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5편의 연재 기사를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침묵해왔던 여러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Public Service 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보도 경험을 토대로, 오버홀서는 피해자 비난과 익명보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실명이 공개되어도 사생활은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Margolick, 1990). 동시에, 역으로 익명처리 보도의 궁극적인 목적-피해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물론,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을 경우, 비공개실익이 더 크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온전한 인격체인 성인의 정보를 숨기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유아화(infantilized)시키는 것이라 비판했다(Duara, 2014). 더 나아가, 익명처리 관행은 가정폭력 혹은 성범죄의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의 실명 공개가 가져오는 개인적·사회적 이득-유죄판결과 침묵해온 피해자들의 고백 등-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3) 기사의 초점

성범죄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제를 선별하는 기자의 관점 또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기사의 핵심 주제와 이를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 일회성의 가십이 될 수도, 혹은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기여하는 탐사보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사의 초점’ 문제는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버클리 미디어 연구소(Berkeley Media Studies group, 2015)는 2011년부터 2013년 〈뉴욕 타임스〉를 포함한 미국의 우수 언론사 17곳의 성폭력 뉴스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기사의 절반 이상이 피고인의 구속이나 재판 과정 등 사법체계에 대한 내용인 반면, 생존자 치료 및 재활 소식이나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한 기사는 각각 6%와 8%에 불과했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취재 시 언론인이 첫 번째, 특정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다양한 성범죄의 맥락을 이해하고 재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제도의 문

제를 관찰하고, 두 번째, 재판장 밖에 있는 취재원을 적극 인터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발생 1년 이후, 피해자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중에게 시사점을 던지는 측면에서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선 보도준칙이 이상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스턴 글로브>의 가톨릭 교회 성스캔들 보도와 <뱅거 데일리 뉴스(Bangor Daily News)>의 ‘Proof’ 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 2001년 당시 <보스턴 글로브>는 펜실베이니아 가톨릭교회에서 90명 이상의 사제가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을 기사화하며, 성직자 개인이 아닌 범죄를 은폐한 교단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폐쇄적인 시스템을 집중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아동 성추문 문제를 용감하고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2003년 Public Service 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한편, <뱅거 데일리 뉴스>가 2013년에 제작한 ‘Proof’ 시리즈는 영상 인터뷰를 활용해 성범죄 ‘생존자’들의 경험과 회복 과정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또 다른 탐사보의 예시로, 2015년 <프로퍼블리카>의 크리스천 밀러와 마샬 프로젝트의 켄 암스트롱이 취재해 2016년 풀리처 상을 수상한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An Unbelievable Story of Rape)”를 언급할 수 있다. 2008년 웨스트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 여성(마리)이 무단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접수된다. 그러나 경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가 거짓이었음을 시인한다. 이후, 피해자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고 합의로 사건은 마무리된다. 몇 년 후, 두 형사의 끈질긴 추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인이 콜로라도에서 몇 명의 다른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밝혀진다. 밀러는 형사들의 수사를, 암스트롱은 마리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범법자로 만든 워싱턴 경찰을 취재했고, 6개월 간 마리를 설득한 끝에 해당 사건을 기사화한다. 두 기자의 취재방식과 기사 구성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6개월 이상에 걸쳐 성폭행범의 접견권을 확보했지만, 범죄자의 인터뷰는 단 한 차례만 인용되었다. 또한, 보통의 사건사고 기사가 범죄 상황 묘사에 치중하는 반면, 해당 기사에는 디테일은 포함하되 절제된 어조로 서술된 단 몇 문장만이 실렸다. 이 사례는 연쇄 강간사건의 엽기성과 선정성이 아닌, 성폭행 이후 피해자의 삶과 경찰 조직의 명암, 성범죄 생존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보도형태라 할 수 있다.

NPR 지침에서도 기자들에게 보도된 사건 속 사람이 아닌, 범죄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안한다. 다시 말해, “10대 강간피해자 소녀”와 같이 등장 인물의 성별, 나이, 외모 등에 대한 과도한 묘사보다 “성폭행을 당했다(했다)”는 사건 행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NPR 지침은 가해자를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인물이라는 “예고자”나 “추악한 괴물” 등으로 지칭하는 경향도, 여성들로 하여금 성폭력의 경고 신호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뉴스 훅(News hook)

일반적으로 뉴스 훅(News hook)은 특정 이벤트에 대한 매체와 대중 모두의 관심을 자극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의미한다. 특히, 성폭력 보도에서는 “오늘 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가”와 같은 기폭제 역할을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뉴스 훅이 매력적인 기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청자의 주목을 받고, 경쟁 기사와 비교해 여러 매체를 통해 (재)확산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범죄 기사에 있어서의 뉴스 훅은 기자와 편집인이 특정 사건의 세부적인 요소들 중 무엇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지, 더 나아가 대중의 관심을 어디로 유도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는 앞서 서술한 ‘기사의 초점’과 유사할 수 있지만 ‘기사의 초점’이 주제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라면, ‘뉴스 훅’은 기사거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구성과 표현 방식에 방점이 있다.

전술했듯이, 성폭력 범죄를 다룬 과반수 이상(51%)의 기사들은 재판이나 체포, 유죄 여부 등 해결책은 부재한 채 형사재판 과정에 치중하고 있었다(Berkeley Media Studies group, 2015). 전체 기사의 9%를 차지한 공인 혹은 유명인과 관련한 사건보도들도 개별 사례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폭행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채택한 연방정부의 정책 기사는 단지 6%에 불과했다. 물론, 성범죄 재판과정이나 관련법 개정을 다루면서도,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뉴스 훅으로 설정한 일부 보도들이 존재한다. 한 예로, 2013년 텍사스 달라스 뉴스의 아동 성매매 개혁 요구에 관한 기사에서는 핵심 배경과 맥락(미국에서 아동 밀매 사건의 20%가 텍사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며, 관련 법의 합법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Berkeley Media Studies group, 2015).

이와 관련해 MNCASA(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미네소타 성폭력방지연합)에서는 성범죄 언론보도 시, 묘사에 있어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접근 방식, 흥기 사용 여부, 물리적 폭력이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와 연관성이 높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세부사항(사생활, 습관, 옷차림, 외모 등)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대중에 의한 2차 가해로 번질 우려가 있는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도발적으로 옷을 입은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 흥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았다.
- 피해자는 10대 소녀였다(나이 관련).
- 피해자는 성매매를 시도했다. 만취한 상태였다. 자의로 가해자와 동행했다.
- 피해자는 과거 범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

(5) 인터뷰방식

피해자의 경험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윤리적 감수성이 요구된다. 많은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자는 숙련된 인터뷰 기술, 법률에 대한 이해, 트라우마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가능하다면 여성이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적어도 동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Chicago media toolkit, 2011). 이와 관련해, MNCASA의 “성폭력 보도: 기자들을 위한 가이드(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guide for journalist)”에서는 용어 사용방식뿐만 아니라 인터뷰 상황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올바른 기자의 자세도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기자는 피해자의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소속과 인터뷰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두 번째, 인터뷰 질문은 공정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답변을 얻기 위해 강요, 회유, 속임수, 보수 제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많은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 당시 기억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다. 이에 기자는 피해자의 고백이 매우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질문들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2009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한 공공청렴센터(Center for Public Integrity)의 크리스틴 롬바르디(Kristen Lombardi)는 성범죄 취재에 있어서 증거와 문서 수집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이 외에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그들을 믿지만, 고백의 진실성과 신뢰도를 위해 미리 예상가능한 질문들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이라고 확신시켜줌으로써 인터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터뷰 시간, 장소, 속도 등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양도했다고 설명했다.

(6) 새로운 취재기법의 도입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MECASA(The Main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는 2013년부터 <뱅거 데일리 뉴스(BDN)>와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BDN>에서는 메인 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성폭력 인식의 달에는 관련 피드 30여 편을 발간했다. 한편, 언론사 직원들을 성범죄 관련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 및 기사 작성 시 주의할 사항(예를 들어, 고발자의 이름 혹은 식별 정보의 공표 지양)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2. 포인터 연구소의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미국 내 주요 연구소 및 NGO에서 제시한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권고사항은 크게 취재 과정(인터뷰 방식과 새로운 취재 기법)과 기사 작성(용어 사용, 피해자 실명 공개, 기사의 초점과 뉴스 혹)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며, 단계별 세부적인 대응방식이 존재했다.

성범죄 보도의 본래 목적은 공익 실천에 있다. 즉, 성범죄 보도는 단순히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발생률을 낮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담론을 둘러싼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아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잘못된 취재 관행과 인식은 피해자를 불필요한 폭력에 노출시키고, 인격권을 손상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된다. 취재 중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거나, 보도 이후에도 범죄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의 희생을 부각시키는 기사의 헤드라인 작성과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된 기사의 대표 이미지 선정, 피해 내용 상세 기술 등의 문제는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를 경험한 이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미국 내에서 배포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 중 자주 인용되는 비영리 언론교육기관 포인터 연구소(Poynter Institute)가 제안한 보도지침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기자들이 성범죄 사건 취재 전 자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목록으로, 취재 대상 선정부터 사실확인까지 취재의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지침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1) 보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해당 기사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기사 작성 전, 적절한 문서와 정보,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가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가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이드라인은 가해자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익 실현을 위한 기사화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이야기한다.

- 전·현직 임명직, 선출직 정치인
- 기타 분야의 영향력을 지닌 공인: 경찰서장, 교장, 교육감과 같은 강력한 공적 책무를 지닌 공무원
- 의사, 상담사, 교사 등 미성년자들과 접촉이 가능한 직종의 인물들

(2) 잠재적인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기자는 특정 사건의 잠재적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면, 더욱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 몇 명의 고발자를 확보할 수 있는가?
- 피고인은 여타의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접근할 수 있었는가?

(3) 성희롱(sexual harassment)인가, 성폭력(sexual assault)인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가? 일반적으로 성희롱과 성폭행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용어의 본질은 확연히 다르다. 권력자에 의한 성폭행은 높은 뉴스가치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

다. 한편, 와인스타인, 로이 무어 알 프랑켄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치한(sexual harassers)은 신체적 폭행범(assailant)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언론은 기준이 모호한 희롱보다는 형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폭행 사건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희롱은 권력 남용의 부작용으로 거의 모든 조직에 만연하며, 여전히 유리천장이 유효한 현 사회에서 불평등한 구조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취재 시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보도를 준비해야한다.

- 수십 년 전에는 묵인되었으나 현재는 범죄로 인정되는 성희롱의 경우, 그 행동 기준에 대해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 성희롱 혹은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지식이 필요한가?
- 특정인에 의한 성희롱 피해의 주장은 불평등에 기여하는 조직의 폭력적 문화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가?

(4) 취재원 사용과 사실 확인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취재원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확인 가능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는가? 사안에 따라 성희롱 혹은 성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많이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만약 취재원이 자신의 경험을 주변의 친구 혹은 가족과 공유했음을 밝힌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가?
- 고용 날짜와 시간, 여행 이벤트,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사건 전반을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거가 존재하는가?

(5) 익명 취재원 출처의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언론보도 시, 피해자들은 정당한 이유에 따라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사는 이를 이해하는 동시에,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원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기사 내 모든 취재원이 익명으로 처리된다면, 보도 전 확보해야 할 취재원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 인터뷰에 응한 익명 취재원들은 가해자의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실명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 익명 취재원 사용에 있어 공유된 지침을 따르고 있는가? 익명 취재원 실명이 선임 에디터에게 공개되었는가? 유사한 주장을 하는 별도의 익명 취재원이 존재하는가?
- 어떠한 조건에서 익명 취재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가? 취재원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보도로 인해 언론사가 고소를 당할 경우, 취재원은 이름을 밝힐 의향이 있는가?

(6) 피해자를 대면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있는가? 피해자와의 만남에서 기자는 불필요한 가해와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 본격적인 취재 전, 보도의 전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해아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
- 피해자가 상담서비스를 받도록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 피해자가 인터뷰에 응할 수 있을 만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 섬세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가?(개방형 질문 마련, 성폭력 보도 과정 소개 등)
- 혐의 폭로를 통해 피해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이러한 동기는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7) 어떻게 피의자들에게 기사의 공정성을 증명할 것인가? 저널리즘의 원칙 중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피의자로부터 정당한 답변을 받고 싶다면, 피의자에게 취재한 이야기와 정보를 공유한 후 답변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피의자에게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
- 주장의 깊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후속 기사를 작성할 의향이 있는가?
- 독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기사를 포함, 취재의 전 과정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 기자가 정보의 출처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대다수의 경우 고소인의 이름은

피의자에게 공개된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기사작성 시 적합한 어조와 언어는 무엇인가?** 글쓰기에서 의미 전달 방식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상으로 중요하다. 의도적으로 사건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것은 기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비판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어가 포함되었을 경우, 어떻게 글을 수정할 것인가?
-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건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서술할 것인가?
- 기사의 헤드라인, 티저 광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여타의 광고 글들이 기사 자체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 인터뷰 영상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게시할 것인가? 혹은 편집해 공개할 것인가?

(9) **기사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가이드라인은 기자로서 독자들과 취재의 전 과정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 취재보도 과정을 구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 해당 기사를 왜, 어떠한 이유로 취재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피해자들이 어떻게 당신의 취재원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취재원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당신이 한 노력은 무엇인가?

V. 소셜미디어와 피해자 인격권

오늘날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례는 과거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Koslow, 2013). 특히, 소셜미디어가 고유의 특수성으로 21세기 여성운동의 근거지로 부상하면서 역설적으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운동의 본질에 대한 왜곡은 더욱 심화되었다(Stubbs-Richardson et al., 2018). 실제로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SNS 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상과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비난과 모욕이 일상화되는 등의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 현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도 SNS 상에서는 피해자 옹호보다 비난하는

게시물이 더 많이 공유되고(Stubbs-Richardson et al., 2018), 피해자의 정보와 사진 게시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Almasy, 2013).

한편, 오늘날 성폭행피해방지법 관련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피해자의 증거로 채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소셜미디어 등장 초기, 재판부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단순 가십으로 취급하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주 커먼웰스 대 모건(Commonwealth v. Morgan)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릴 만큼 입증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소셜미디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맹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강한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특성상, 포스팅은 당시 작성자의 정황, 기분 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힘들고, 이용자는 실제 상황과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다양한 기능(좋아요, 팔로우, 프로필 기분 표시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가해자들은 유리한 재판을 위해 피해자의 과거 사진이나 신상정보, 고소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적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게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배심원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포스팅만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거나(Diss, 2013),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에게 더 낮은 징역형을 권고하기도 한다(Wagner, 2013).

이처럼 소셜미디어 포스팅은 역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폭력피해방지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배치되는 바, 최근 성폭력사건에 한해 소셜미디어 증거물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Kowslow, 2013; Janzen, 2015).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 속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성폭력피해방지법은 전통적인 미디어 출판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상에서 새롭게 등장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역부족이라 지적한다. 이에 후속 개정에서는 소셜디어를 포함, 다양한 매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피해 양상과 그 속성을 분석·반영함으로써 현행법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Birdsell, 2014; Janzen, 2014; Lowen, 2015).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정보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변화될수록 관련 법도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현행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소셜미디어상 인격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사례 1

2011년 8월, 미국 켄터키주의 사바나 디트리히는 친구들과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피해 동영상을 촬영해 디트리히의 사진과 함께 온라인에 유포했고, 이로 인해 1급 성적 학대와 관음행위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플리바기닝(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제도; 유죄협상)과 이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도금지명령(gag order)을 내렸다. 이에 디트리히는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위반하고, 6개월의 징역과 500달러의 벌금형을 감수하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해자의 신상을 게시했다. 이후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용기를 내서 성범죄를 신고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나를 침묵시켰다”고 주장했다(Lash, 2012).

○ 사례 2

2012년 아리조나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성폭행 혐의로 동급생들을 신고한 후, 해당 학교 재학생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모욕적인 비난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는 재학생들로 인한 2차 가해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가 성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타이틀 IX(Title IX)²⁾을 어겼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리조나 연방지방법원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사이버불링은 실질적으로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주로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페이스북 댓글이 학교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현실적으로 학교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 사례3

2017년 7월 5일, 천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로버트 카다시안(Robert Kardashian)은 자신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 약혼녀인 블랙 차이나(Blac Chyna)의 노출

2) 1972년 제정된 Title IX(타이틀 나인)은 대학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초기에는 대학이 남성 위주의 스포츠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활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 오바마 정부는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도 타이틀 IX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현재 해당 법률은 대학 내 성범죄 발생 시, 경찰 조사결과와 사법부 판결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증거(the lowest possible standard of proof)가 존재한다면, 대학은 성폭력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녀가 외도를 했으며 아이 주변에서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동의하지 않는 음란물을 게재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경범죄로 분류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SNS에 게시된 증거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자극적인 프로필 사진과 같은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도록 허용할 경우, 배심원의 입장에서 피해자 주장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판결하고, 카다시안이 블랙 차이나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로서 성폭력피해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위 사건들은 현행 성폭력피해방지법과 보도금지 명령이 역으로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 1>의 피고인들은 디트리히의 영상과 사진을 게시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디트리히 역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Kennerly, 2012). <사례 2>의 경우, 동급생들로 인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보여준다. <사례 1>과 같은 쌍방향의 사생활 침해는 기존의 성폭력피해방지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다(Birdsell, 2014). 또한, 미국 전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리벤지 포르노나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온라인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오프라인 기반의 기존 법에 호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하는 상호작용 형태를 반영하지 않은 성폭력보호법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Desai, 2014). 또한, 오늘날 수정헌법 제1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리벤지 포르노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성적 발언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앞서 <사례 2>와 <사례 3>은 대면적인 상황을 전제한 피해자 인격권 보호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Birdsell, 2014; Janzen, 2014; Lowen, 2015).

VI. 결론

종합하면, 미국의 성범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인격권 침해 논의는 피해자의 프라이버

시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기본권 속에서 사법제도와 민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피해자보호법을 통해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연방법원은 미디어 매뉴얼을 토대로 수사 중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비롯된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소셜미디어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개정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수호 대상인 ‘수정헌법 제1조’로 인해 대다수의 판결은 여전히 언론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하다(Clark, 2007). 2000년대 이후로 피해자 인격권을 우위에 두는 예외적인 판례들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주 법원은 연방대법원의 전통적인 판결인 언론의 자유 수호를 따른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필연적인 제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언론사와 시민단체, 개인 활동가들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 학술연구소와 시민단체들은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언론사가 윤리적 차원에서 성범죄에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피해자 인격권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기사가 보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취재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사에서는 기자 개개인이 피해자 인권 보고의식 함양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사건 전문기자와 보도감시제도를 도입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미투 운동 이후, ‘젠더에디터’ 직을 만들고 여성 독자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이상 반영하자는 논의를 해나가고 있으며(Probolus, 2020), 젠더 관련 카테고리(Gender & Society) 신설, 젠더 이니셔티브(Gender Initiative)를 런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노력과 비교할 때, 국내에서도 제도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미 연방증거법 규정의 세부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류병관, 2008; 김일용, 2010). 국내에서도 피해자의 특별한 성적 취향(sexual predisposition) 혹은 성적 패턴과 성매매 과거 등 성관계 이력이 2차 가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피해사실을

공개한 여성들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피해자다운 피해자’인지 평가받으며,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윤지영, 2018). 설상가상으로 국내 일부 언론들도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반영한 선정적인 성폭력 기사들을 여전히 ‘특종’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신설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성폭력상담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들도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의 피해자 인격권 보호 활동들은 인권·복지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 상담, 보호와 수용, 혹은 치료 차원 등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도 한국기자협회가 제공하는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의 형식적 선언 이상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소와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제공하는 미국의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국내의 보도 지침은 윤리적인 차원의 제안 수준에 불과하다. 성범죄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침을 넘어선 실천적 의미를 내포한다. 실제 논의 과정 속에서 관행으로 치부해 온 윤리원칙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또 다른 의견 개진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까지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확립은 단지 올바른 언론의 역할과 기사 쓰기 방식에 대한 고민만이 아닌, 가부장제 사회 속의 상징적 사건으로써 성폭력을 읽어내고, 그 저변의 문제들을 탐구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강기정 · 류병관 (2018). 형사절차상 압수 · 수색에서 디지털 증거수집의 적정성 확보 방안. <법학연구>, 29(3), 153-176.
- 김일용 (2010). 성범죄에 대한 미국연방증거규칙의 대응과 도입가능성. <법조>, 59(12), 77-113.
- 류병관 (2008).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거제한에 관한 연구-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 (Rape Shield Law)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8(1), 365-392.
- 윤지영 (2018).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절차법적 개선 방안 모색: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용 제한 및 역고소 남용 대응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0(1), 175-202.
- Arenella, P. (1995). Foreword: OJ Lesson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69 (4), 1233-1266.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scal69&div=35&id=&page=>
- Almasy, S. (2013, March, 17). Two teens found guilty in Steubenville rape case. CNN, Retrieved from <https://edition.cnn.com/2013/03/17/justice/ohio-steubenville-case/index.html>
- Anderson, M. J. (2002). From chastity requirement to sexuality license: Sexual consent and a new rape shield law.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0(1), 51-162.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gwlr70&div=10&id=&page=>
- Ayres, S. (2012) "Expanding rape shield laws: Breaking through prejudice for better protection of battered women. *Cardozo Journal of Law & Gender*. 19(3): 821-836
- Baum, M., Cohen, D. & Zhukov Y. (2018). Does Rape Culture Predict RApe? Evidence from US newspapers, 2000-2013.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263-289. Retrieved from <https://dash.harvard.edu/handle/1/38435482>
- Berkeley Media Studies Group (2015). What's missing from the news on sexual violence? An analysis of coverage, 2011-2013. Berkeley Media Studies

- Group. Retrieved from <http://www.bmsg.org/resources/publications/issue-22-whats-missing-from-the-news-on-sexual-violence-an-analysis-of-coverage-2011-2013/>
- Berlin, B. J. (1995). Revealing the Constitutional Infirmities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Florida's New Privacy Statute for Sexual Assault Victims.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23(2), 513-560.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flsulr23&div=30&id=&page=>
- Black, J. (1995). Rethinking the naming of sex crime victims. *Newspaper Research Journal*, 16(3), 96-112.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77/073953299501600309>
- Blanding, M. (2017, March, 15) Covering Sexual Assault. Nieman Foundation Report. *Nieman Foundation*. Retrieved from <https://niemanreports.org/articles/covering-sexual-assault/>
- Browning, J. (2011). Digging for the Digital Dirt: Discovery and Use of Evidence from Social Media Sites, *Science & Technology Law Review*, 14(3), 465-469.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comlrtj14&div=26&id=&page=>
- Bryan v. State, 2010 WL 1137038 (Tex.App.-Fort Worth 2010)
- Burgess-Jackson, K.(1999) 'A History of Rape Law,' in Keith Burgess-Jackson (ed.) *A Most Detestable Crime:New Philosophical Essays on Rape*. Oxford University Press.
-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Retrieved from <https://psycnet.apa.org/buy/1981-08163-001>
- CBC Radio. (2019, Aug, 22). "An enormous change in the news agenda": How trauma-informed reporting is transforming journalism. CBC. Retrieved from <https://www.cbc.ca/radio/thesundayedition/the-sunday-edition-for-august-25-2019-1.5256740/an-enormous-change-in-the-news-agenda-how-trauma-informed-reporting-is-transforming-journalism-1.5256757>
- Chicago Taskforce on Violence Against Girls & Young Women, (2011). *The Chicaco taskforce tookit: Reporting on Rape and Sexual Violence*. Retrieved

- from <https://barcc.org/assets/pdf/Chicago-Taskforce-Media-Toolkit.pdf>
- Clark, C. (2007). Collateral damage: how closing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s flouts the Constitution and fails to benefit the child. *University of Louisville Law Review*, 46(1), 199-224.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branlaj46&div=9&id=&page=>
- Commonwealth v. Morgan, 2015 WL 9263617 8 (S.C. Penn. 2015)
- Coombs, M. I. (1993). Telling the Victim's Story. *Texas Journal of Women & Law*, 2, 277-315.
- Corrigan, R. (2013). Up against a wall: Rape reform and the failure of success. NYU Press.
-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420 U. S. 469. (1975)
- Desai, S. (2015). Smile for the camera: The revenge pornography dilemma, California's approach, and its constitutionality. *Hastings Constitutional Law Quarterly*, 42, 443-469.
- Diss, L. E. (2013).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e Inclusion of Social Media Evidence in Sexual Harassment Cases and How Courts Can Effectively Control It. *Boston College Law Review*, 54(4), 1841-1880.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bclr54&div=53&id=&page=>
- Dressler, J. (1995). *Understanding criminal law*. Matthew Bender.
- Doe v. Round Valley Unified Sch. Dist., 873 F. Supp. 2d 1124, 1136 (D. Ariz. 2012).
- Dura, N. (2014, Oct, 24) Is it ever okay to name victims?: Editors question the policy of omitting information in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cases. *Columbia Journalism Review*. Retrieved from https://archives.cjr.org/minority_reports/domestic_violence_reporting.php
- Fialkow, D. E. (2005). Media's First Amendment Rights and the Rape Victim's Right to Privacy: Where Does One Right End and the Other Begin. *Suffolk University Law Review*, 39(3), 745-772.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sufflr39&div=37&id=&page=>
- Florida star v. B.J.F., 491 U.S. 524 (1989)
- Franiuk, R., Seefelt, J. L., & Vandello, J. A. (2008). Prevalence of rape myths in

- headlines and their effects on attitudes toward rape. *Sex roles*, 58(11), 790-801. Retrieved from <http://10.1007/s11199-007-9372-4>
- Gartner, M. (1991). Document: Naming the Victim. *Columbia Journalism Review*, 30(2), 54.
- Haddad, R. I. (2005). Shield or Sieve—People v. Bryant and the Rape Shield Law in High-Profile Cases.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39(2), 185-222.
- Hess, A. (2012). Can Twitter Help Rape Victims Find Justice? *Slate*. Retrieved from <https://slate.com/human-interest/2012/07/savannah-dietrich-outs-her-rapists-on-twitter-and-facebook.html>
- Hermida, M. (1994). Trial by tabloid. *St. Thomas Law Review*, 7(1), 197-216.
- Janzen, S. (2014). Amending Rape Shield Laws: Outdated Statutes Fail to Protect Victims on Social Media. *John Marshall Law Review*, 48(4), 1087-1118. Retrieved from <https://repository.jmls.edu/lawreview/vol48/iss4/5/>
- Jacobs, J. (2020). #MeToo Cases' New Legal Battleground: Defamation Lawsuit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0/01/12/arts/defamation-me-too.html>
- Kennerly, M. (2012, Jul, 24). Savannah Dietrich: A Right To Lie, But Not To Criticize A Plea Bargain? *Litigation & Trial: The Law Blog of Plaintiff's Attorney Max Kennerly*. Retrieved from <https://www.litigationandtrial.com/2012/07/articles/series/special-comment/savannah-dietrich-free-speech/>
- Koslow, S. I. (2013). Rape Shield Laws and the Social Media Revolution: Discoverability of Social Media—It's Social Not Private. *Touro Law Review*, 29(3), 839-865.
- Kunst, J. R., Bailey, A., Prendergast, C., & Gundersen, A. (2019). Sexism, rape myths and feminist identification explain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the #metoo social media campaign in two countries. *Media Psychology*, 22(5), 818-843.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80/15213269.2018.1532300>
- Lash, J. (July 27, 2012). After a Sexual Assault, a Teen Victim Turns to Social Media.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Exchange.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Change*. Retrieved from <http://jjie.org/after-sexual-assaultteen-victim->

- turns-social-media/90464.
- Matoesian, G. M. (1995). Language, law, and society: Policy implications of the Kennedy Smith rape trial. *Law and Society Review*, 29(4), 669-701.
- Matoesian, G. M. (2001). *Law and the language of identity: Discourse in the William Kennedy Smith rape trial*. Oxford University Press.
- Margolick, D. (1990, March, 25) A Name, a Face and a Rape: Iowa Victim Tells Her Story.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1990/03/25/us/a-name-a-face-and-a-rape-iowa-victim-tells-her-story.html>
- 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2013).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Guide For Journalists*. 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Retrieved from http://www.mncasa.org/index_451_3523309454.pdf.
- Moffeit, M. & Lombardi, K. (January 19, 2012), Ethics and Practice: Interviewing Victims. *Dart Center for Journalism & Trauma*. Retrieved from <https://dartcenter.org/content/ethics-and-practice-interviewing-victims>
- Pennington, R. & Birthisel, J. (2016). When new media make news: Framing technology and sexual assault in the Steubenville rape case. *New Media & Society*, 18(11), 2435-2451.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77/1461444815612407>
- Reidy, M. (2004).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on Rape Shield Laws in High-Profile Cases: Is the Victim Receiving a Fair Trial.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54(1), 297-334. Retrieved from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cathu54&div=12&id=&page=>
- Reitan, E. (2001). Rape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Hypatia*, 16(2), 43-66.
- Roman, D. & Estrich, S. (2011). Under the Rape Shield: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Rape Shield Laws. Working Papers in Feminist Research, *UCLA Center for the Study of Women*.
- Stubbs-Richardson, M., Rader, N. E. & Cosby, A. G. (2018). Tweeting rape culture: Examining portrayals of victim blaming in discussions of sexual assault cases on Twitter. *Feminism & Psychology*, 28(1), 90-108.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77/0959353517715874>
- Schwendinger, J. R., & Schwendinger, H. (1982). Rape, the law, and private

- property. *Crime & Delinquency*, 28(2), 271-291.
- Sheffield E. (2013, February 8). Lawyers meet in Dallas on child sex-trafficking. The Dallas Morning News. Available at: <http://www.dallasnews.com/news/crime/headlines/20130208-lawyers-meet-in-dallas-on-child-sex-trafficking.ece>. Accessed June 30, 2015.
- Soshnick, A. Z. (1987). The rape shield paradox: Complainant protection amidst oscillating trends of state judicial interpretation.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8(3), 644-698.
- Stephen, R. S. (1992). Prejudicial Publicity Surrounding a Criminal Trial: What a Trial Court Can Do To Ensure a Fair Trial in the Face of a Media Circus. *Suffolk University Law Review*, 26(4), 1063-1083.
- State v. Globe Communications Corporation, 648 So. 2d 110 (Fla. 1994)
- Roman, D., & Estrich, S. (2011). Under the Rape Shield: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Rape Shield Laws. *Working Papers in Feminist Research*, UCLA Center for the Study of Women. Retrieved from <https://escholarship.org/uc/item/0w62h4dp>
- People v. Bryant, 94. P. 3d. 624(Colo), stay denied, 125 S. Ct. 1(2004).
- Poynter Institute. (2017). Which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stories should you cover? Here are some guidelines. Retrieved from <https://www.poynter.org/ethics-trust/2017/which-sexual-harassment-and-assault-stories-should-you-cover-here-are-some-guidelines/>
- Probolus, (2020, Feb, 14) Men, You Need to Listen to Women.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0/02/14/opinion/letters/nytimes-letters-women.html>
- Wagner, A. (Jan. 30, 2013). Social Media's Effect on Rape Culture, *The Quinnipiac Chornicle*. Retrieved from <https://quchronicle.com/37852/arts-and-life/social-medias-affect-on-rape-culture/>
- WAVAW. (n.d.). *What is Rape Culture?*. WAVAW Rape Crisis Centre. Retrieved from <http://www.wavaw.ca/what-is-rape-culture/>